■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3. 18.>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환급관서
	상호(법인명)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지급요구일	
	환 급 사 유	지급요구번호	
	세 목	환 급 금 받는 방법	
	환 급 금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충당금액			

※ 귀하(귀사)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에 충당(납부)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환급금 결정내용, 환급계좌 신고 관련(☎ 부과담당자 번호)
환급금 수령방법, 지급일 관련(☎ 환급담당자 번호)

안 내 말 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3.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 임 장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서명 또는 인)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영 수 증 서

국세환급금 원정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받는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전화:)		
계좌이체 요청시	은 행			
	계 좌 번 호			

우체국에서 수령 시 구비 서류

구 분	본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개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본인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법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5.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임의단체	1. 국세환급통지서 2. 본인(대표자) 신분증(원본) 3. 고유번호증,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중 1개	1. 국세환급금통지서, 2. 대표자 신분증(원본) 3. 대리인 신분증(원본), 4. 위임장 5. 고유번호증, 임의단체확인서류(정관 등) 중 1개

※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없는 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증명서 확인 후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 수감자가 직접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수용증명서, 위임장(대리인 : 담당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 지참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법인에 대한 환급금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타은행계좌로 이체하려면 주주명부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고객센터(새소식 공지) 확인 요망(「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 관련)

※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